

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3월 7일  
전문위원 권 오숙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5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3년 1월 17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 2.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필수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업무를 대면업무, 필수업종 등으로 한정한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 및 띄어쓰기 수정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기본계획은 적절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수립하는 지원계획으로 변경 (안 제6조)

라.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의 위원회를 대신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상의 ‘노동자권익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에서 구청장으로 규정 (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10. 19. ~ 11. 8.)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취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 종사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대면업무”나 “필수업종”으로 한정된 문구를 수정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 “필수업종” 대신 “필수업무”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업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난대응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지원업무까지 포함되어 구분이 어렵고 갈등유발 요인이 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임
  - 그리고 「필수업무종사자법」<sup>1)</sup>에 따라 지역적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6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필수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고자, 당초 임의규정이었던 “기본계획수립”을 근거 법령에 따라 강행규정인 “지원계획수립”으로 변경함
- 부칙에서는 「필수업무종사자법」<sup>2)</sup>의 개정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에서 구청장으로 규정함

※ 부칙규정: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출처: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음

## 다. 종합의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노동자’<sup>3)</su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21년 5월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필수업종 예시(정부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중 - 재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건·의료, 돌봄업무, 택배·배달, 환경미화, 대중교통, 여객운송 등

- 그리고 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1. 5. 18.) 및 시행(2021. 11. 19.)하였으나, 이미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거나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음
- 이에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에 법률 시행일(2021. 11. 19.)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sup>4)</sup>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 · 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되고, 시 · 군 ·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된다.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 · 불교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다. 삭제 <2013. 8. 6.>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